

6·29 선언이후의 언론상황 변화

6·29 이후 한국 언론의 변화는 실로 놀라울 정도였다.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언론도 그동안 누리지 못한 자유를 향유하게 됐다. 제도적으로는 1987년 11월 11일 언론기본법이 폐기됨에 따라 언론자유를 구현할 수 있었다. 언론기본법의 족쇄에서 벗어난 언론계엔 그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쳤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과 방송법 등 새 언론법이 도입됐고, 그에 따라 6·29 이후 1년여 만에 서울과 지방에 14종의 일간지가 등록을 마치는 등 새로운 일간지가 잇달아 창간됐다. 언론 시장은 신생 언론의 등장과 함께 기존 언론사들의 증면경쟁이 불붙으며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졌다. 한편 정치 사회적 민주화는 각 기업에 노조설립바람을 일으켰으며, 언론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국 각 언론기관에는 노조가 설립돼 처우개선에서부터 편집권독립 등을 두고 경영진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언론의 자유는 사이버 언론인 문제를 낳기도 했다. 기성 언론들은 생존의 길이 윤리성 강화에 있음을 깨닫고 이를 위해 각 사별로 윤리강령을 제정하거나 취재준칙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을 펼쳤다. 편협도 수서사건 및 보사부기자실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는 등 언론인들의 품위유지와 윤리성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1996년 창립 40주년을 맞아 '신문윤리강령및 실천요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도 했다.

1) 언론기본법폐지

국회는 1987년 11월 11일 언론기본법을 폐기시키고,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등을 통과시켰다.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은 언론계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는 등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등록요건으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과 문공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발행정지(정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문제 조항으로 꼽혔다. 각 정당과 국회는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은 제정에 앞서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었다. 그러나 정작 언론계는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 언론활성화협의회는 1987년 6월 29일 언론기본법 폐지를 건의한 뒤 해산하고 말았다.

2) 신생 매체 폭발적 증가

새 언론법의 공포와 함께 신생 매체들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관련 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등록을 받아주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명목상 등록제였지만 독재정권들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해 왔었다.

정치 사회적 민주화의 진전으로 정부의 언론정책 역시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문공부는 발행인의 결격사유유무, 자본의 독점여부, 시설의 확보여부 등 3단계로 나누어 심사해 법적 요건을 갖추면 등록필증을 내주었다.

그 결과 6·29선언을 한지 2년쯤 지난 89년 4월에는 일간지와 방송사가 그 전보다 배나 늘게 됐다. 일간신문은 6·29선언 당시 32종이었으나 89년 4월에는 65개로 늘어났다. 새 일간지는 지방지와 경제지가 주류를 이뤘다. 지방지의 경우 6·29선언 당시 10개였으나, 25개로 크게 늘었다. 경제지 역시 2개에서 11개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경제지는 경제종합지보다 업계 전문지가 대부분을 차지한 게 특징이었다.

또 전파매체도 평화방송과 불교방송, 두 라디오방송이 새로 생겼다.

한겨레신문(창간일 1987년 9월 23일)은 22년만에 새로 나온 일간지였으며, 그 독특한 설립방식으로 주목받았다. 동아 조선 양 투위(鬪委)와 80년 해직언론인이 창간의 주축이 됐다는 점과, 창간기금(50억원)을 일반인 모금을 통해 조성해 눈길을 끌었다. 또 당시로선 파격적인 한글전용에 가로쓰기를 채택해 언론계를 놀라게 했다.

3) 증면 경쟁과 월요판 발행

6·29선언이후 신문들은 1년 사이에 두 차례나 증면을 단행했다. 87년 9월 1일부터 주 8면을 늘려 80면이 되었고, 88년 4월부터 1일 16면씩 발행하여 주 96면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증면 경쟁은 1989년 7월 3일 한국일보의 '월요조건' 발행으로 또 다른 국면을 맞았다. 한국일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문은 쉬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에 입각, 정기휴간 없는 신문을 발행하겠다고 사고를 통해 다짐하고 이를 계기로 도약을 이룩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선진국의 경우 '신문 없는 날'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독자들로부터는 환영을 받았다. 한국 신문업계 역시 무휴발행을 하다 기자 등 언론계 종사자들의 건강 등을 고려, 1959년 6월 7일부터 주 1회 휴간제를 도입했다. 또 지난 1960년 10월 23일 주 48면(1일8면)씩 발행하던 신문이 1964년 2월에는 40면으로, 8월에는 다시 32면으로, 1965년 11월엔 28면으로 각각 줄었다. 이는 신문용지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1965년 12월 외산용지가 수입되면서 다시 주 36면을 발행하게 되었고 70년 3월에는 48면으로 다시 증면, 1962년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1981년 1월 언론통폐합의 영향과 국산용지확보 등의 여건변화로 주 72면씩 발행, 12면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로써 1936년 조석간 12면 발행체제 수준으로 회복하게 된 것이다

한국일보의 월요판 발행은 결국 증면경쟁으로 이어져 1일 32면 주 168면 체제

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인력과 광고량 정보량 등을 감안하면 버거운 수준이었다.

각 신문사들은 경제면과 스포츠면 국제뉴스와 지방소식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의욕을 보였으나 독자입장에서 흡족한 수준이 아니었다. 증면 경쟁은 양적 발전만을 거듭했을 뿐 양질의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인력부족으로 치열한 질적 경쟁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광고주 입장에서도 폭발적인 증면은 달갑지 않은 것이었다. 실제 광고협의회는 과당 증면경쟁으로 광고시장의 유통질서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고 무리한 증면의 자제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신문협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4) 높아지는 윤리의식

신생 매체의 난립은 사이버 기자문제를 야기 시켰다. 이에 정부는 ‘프레스카드제의 도입’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언론계의 반발에 부딪혀 이뤄지지 않았다. 자칫 언론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언론계의 시각이었다. 대신 각급 행정기관에 ‘사이비기자 신고센터’를 설치, 강력히 대응했다.

최병렬 문공부장관은 1989년 3월 15일 국회본회의 답변에서 “광고및 구독강요, 부당이권개입과 가짜기자증발급 등 사이버기자문제로 모두 1백87건을 입건했다”며 “이중 73명을 구속했으며, 18명은 불구속 수사중이고 9명은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언론사들은 취재윤리 확립을 위해서도 다양한 시도를 했다. 그중 하나가 출입기자단의 해체였다. 한 예로 한국은행을 출입한 13개 언론사 기자들은 1988년 5월 28일 ‘한국은행출입기자단’이란 이름으로 취재활동을 벌이지 않기로 결의했다.

한겨레신문은 국내언론사로서는 처음으로 1988년 5월 5일 ‘한겨레신문 윤리강령’과 ‘한겨레신문 윤리강령 실천요강’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금품을 사절’하며 ‘취재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기로 했다. 또 윤리위

원회를 설치,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KBS도 1990년 1월 1일 방송인이 지켜나갈 직업적 윤리를 행동규범으로 제시한 방송강령을 제정, 선포했다. 노사합의에 의해 KBS방송개혁발전위원회가 마련한 'KBS방송강령'은 전문 총장 7개항 방송강령 43항으로 되어 있으며 제작, 보도, 편성의 자유보장, 방송의 공정성과 윤리성 확립 및 책임준수, 개인의 인격존중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관행은 사라지지 않아 1991년에는 수서사건관련 대언론로비문제와 보건사회부 출입기자단 금품수수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편협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언론인들이 맹성을 촉구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편협은 이해 3월 1일 수서사건의 대언론 로비문제와 관련한 성명서에서 “사회의 부정부패와 시비들을 척결하는 작업에 앞장서서 감시해야 할 언론인들이 돈을 받고 그 직분을 태만했거나 사실을 왜곡시켰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수서사건과 관련 액수의 다과를 막론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소식에 접하면서 심각한 자책과 함께 먼저 국민 앞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편협은 또 각 언론사별로 자체조사를 실시, 관련자를 문책하고, 폐단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기자단의 해체문제를 포함한 취재체제의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협은 이해 8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회장단및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언론윤리의 제고 및 언론인 이미지 개선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언론윤리특별위원회(가칭)를 두기로 했다.

그럼에도 보건사회부 출입기자단 금품수수사건이 또 발생하자 10월 5일 유감과 사과의 뜻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또 언론의 자정노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출입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각 언론사들에게는 출입기자단 탈퇴뿐 아니라 충분히 취재에 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했다.

이에 조선일보 편집국 기자들은 이해 12월 18일 취재보도활동 등 직무와 관련해 취재원 또는 관계자들로부터 일체 금품을 받지 않도록 결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3개항의 '조선일보 편집국취재준칙'을 채택했다. 이 준칙은 '회사는 취재활동

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고 규정했으며, 회사측과 별도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취재비 산정방식도 확정했다.

한편 편협은 1996년 4월 8일 제40회 신문의 날에 신문윤리강령을 개정 선포했다. 신문윤리강령은 1957년 4월 7일 제1회 신문의 날에 제정한 이후 40년만에 개정됐는데 이는 “현실에 잘 맞지 않는 부문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편협은 1995년 6월 신문협회 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신문윤리강령개정위원회(위원장 박권상)'를 구성, 10차례에 걸친 전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만들었으며, 1996년 2월 16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새 윤리강령은 언론의 책임을 새삼 강조했다며, 규제대상을 종전의 28개부문에 서 60개 부문으로 확대시킨 점이 특징이다.

개정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정기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새 윤리강령은 취재원을 명시할 것과 언론인의 품위유지 기능을 강화한 것, 취재 자체의 윤리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